

● 제291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3. 5.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안 자 :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노식래 의원 외 10명 찬성)
- 나. 제 안 일 : 2020. 2. 4.
- 다. 회 부 일 : 2020. 2. 12.
- 라. 의안번호 : 125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의장은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와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함.
-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의원역량개발센터와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4년 단위 교육연수계획에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운영,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연수위원회를 심의·자문기구로 그 기능을 조정하고,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구성과 총 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
- 교육연수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sup>1)</sup>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는 2015년 초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의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임.
- 본 개정안은 현행 의원 교육연수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회가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 취지를 담고 있음.

### 2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 교육연수활동을 의회 자체 교육연수와 외부기관 교육연수로 구분하고(안 제3조제1항·제4항)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 안 제5조제2항)하는 것임.

1) 제14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이는 그동안 주로 (공공·민간)위탁교육 형태의 의원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해왔던 것에서 의회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그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임.
- 조례 제명은 조례 내용을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내용을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명을 교육연수활동과 관련된 지원·개발·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교육연수활동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

3

**의회 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 의원역량개발센터와 관련 전문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는 ① 의장으로 하여금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회 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② 이를 위해 의원역량개발센터(이하 “센터”)와 교육 관련 전문가를 운영할 수 있으며 ③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다른 기관·단체 등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4년 단위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①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운영에 관한 사항과 ② 센터 관리·운영·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음.
- 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 2019년까지 교육연수과정을 공공위탁(2019년부터는 민간위탁도 가능)과 의회 자체교육으로 구분해 운영해왔음.
- 그러나 위탁교육의 경우 수요자인 의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 일일이 부응하기 어려웠고 참여율 또한 저조했으며(공공위탁 기준 2017년 7명, 2018년 36명, 2019년 12명), 의회 자체교육의 경우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정에 머물렀음(표-1).

<표-1> 최근 3년간 의회 자체 교육연수 상황

연도	교육과정	교육일시	참여인원
2019	청렴특강(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변화하는 국민 인식)	4.30.	시의원, 사무처 직원 120명
	폭력예방교육(일상의 폭력들에 예민해도 괜찮아)	5.23.	22명
2018	공직선거법 특강	2.28.	9명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청렴, 성희롱 등) 특강	7.6.	110명
	제1회 의정아카데미	8.31.	60명
	제2회 의정아카데미	11.1.	32명
2017	공직선거법 특강	10.31.	11명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10.31.	8명

출처 : 2019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의회사무처) 자료

- 이러한 상황에서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의원의 교육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필요한 경우 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정에 따라 다른 기관·단체가 센터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센터 설치 등의 문제는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활용방안이 마련된 이후 이를 반영해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교육연수위원회를 심의·자문기구로 기능 조정,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방법 변경(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교육연수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자문’으로 조정하고, 추가된 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행 조례에 따르면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의원 교육연수 정책,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육연수 사업 등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각종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제7조)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사실상 위원회가 이미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자문’→‘심의·자문’)해 현행화함으로써 조문 간 내용의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임.
  - 위원회 구성 인원을 짝수(10명)에서 홀수(9명)로 조정하고, 위원 구성을 구체화(자격요건별 3명 이내)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이해됨.
  - 위원장을 의원인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도록 한 것은 의회 내 심의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계약투명성 심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등)의 선출 방법을 따른 것으로 보임.

#### 교육연수위원회 회의 개최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9조)

-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 소집 시기와 방법,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음.

-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표결권 유무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기존의 조문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임.

## 6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회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구와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조례상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 취지가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그 내용도 적절함.

---

2)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4. 생략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7. 생략

② 생략